

# 2019년도 제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3. 7.(목요일)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강호갑(분과위원장 대행),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48건(안전번호 제2019-1293호~138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음원파일 직접 게시한 불법복제물 1개 안전(제2019-1293호),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게시물 1개 안전(제2019-1294호), 영화 포스터를 무단 이용한 게시물 1개 안전(제2019-1295호)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링크 게시물 1개 안전(제2019-1297호)는 부결하고, 심의시점에 삭제된 게시물 1개 안전(제2019-1296호)는 전체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3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인터넷신문사명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비공개로 표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성원영 전문위원 : A 위원이 자구수정을 요청하였음
- B 위원 : 별다른 의견 없음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인터넷신문사명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1293호~138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548건임

안전번호 제2019-1293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한 사안이고, 안전번호 제2019-1294호는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홍보성 게시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이며, 안전번호 제2019-1295호는 영화 포스터를 일부 변형하여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사안이고, 안전번호 제2019-1296호는 출판 저작물을 텍스트 파일로 첨부한 사안이며, 마지막으로 안전번호 제2019-1297호는 사이트 운영자가 배경음악을 이용한 유튜브 영상물을 프레임 링크 방식으로 게시한 사안임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293호 ○○을 모방한 사이트에서 다수의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이트를 보여주며) 해당 사이트는 '○○' 유사사이트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의 '▽'위에 점이 찍혀있고, 차트 순위는 '○○'이 아닌 '□□'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은 카카오M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M에서 직접 시정권고를 요청하였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카카오M이 시정권고 조치를 특정해서 보호원에 요청한 것은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보호원에서 민원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음  
카카오가 '○○'을 운영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 파일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 서비스 운영자 자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음원에 대한 권리자로서 본 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 본 건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사안으로 현행 저작권법 해석상 시정권고의 대상이라 보기 어려워 권리자가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제2019-1293호는 시정권고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부결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294호 홍보성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 농구학원의 방학특강을 안내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함
- B 위원 : 농구교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공정이용 또는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에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보았을 때, 상업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A 위원 : 만화 캐릭터를 주된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권리자가 직접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심의대상으로 삼기에는 침해범위가 제약적이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권리자 입장에서는 캐릭터 일부라도 무단으로 이용되었다면 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피해 구제 신청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임  
 시정권고 제도 초기에는 불법복제물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취지였는데 산발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 제기 등 법적 판단을 받기에 권리자 입장에서 애매한 사항이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할 시기로 사료됨
- A 위원 : 만화 코난 만화번역물 사례에서처럼 어떤 게시물이 공유되면 시장의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는 사안별로 판단을 하고 있음  
 농구 관련된 서비스 또는 동호회에서 슬램덩크 캐릭터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건은 시정권고를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부결의견을 밝힘

- 정현순 전문위원 :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시정권고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해당 안전에 대해서는 A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1294호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만장일치로 부결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295호 영화 포스터를 일부 변형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네이버 카페를 보여주며) 카페 회원 수는 현재 454,686명이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공유하고 있음 카페에 올라오는 광고를 척결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 운영진이 게시한 영화 포스터가 문제되고 있음
- A 위원 : 변형한 포스터를 블로그에 올려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영화 포스터 원본을 보여주면서) 카페 회원들에게 무분별한 광고가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올린 것임
- A 위원 : 비트코인 정보와 관련된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허용하

지만 이외 다른 광고 게시물을 업로드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라고  
사료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1295호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만장일치로 부결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출판물을 블로그에 무단 게시하였으나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된 안전번호 제2019-1296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와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 주소를 입력하여 보여주며) 네이버에서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경우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입니다'라고 팝업 메시지가 뜨며, 게시자가 비공개 처리를 했으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라고 다른 메시지가 보임
- A 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가 언제 수집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조사 담당 팀에서 1월 30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 B 위원 : 보호원에서 채증할 당시에는 불법복제물이 확인되었는데 현재는 불법복제물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저작물의 한글 텍스트파일이 첨부파일로 제공되었고,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의 하단부에서 그 분량이 130쪽임을

확인할 수 있음

- B 위원 : 보호원에서 확인했을 때 불법게시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 A 위원 : 민원내용에 다른 작품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있는데 블로그에 다른 게시물도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를 보여주면서) 보호원에서 조사하고 추후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해당 블로거는 한시나 고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임  
보시는 바와 같이 현 시점에는 상업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시물이 많이 업로드 되어있음
- A 위원 : '해리포터'와 비슷한 출판물이 게시되어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직접 확인해본 결과 없다고 답변함
- A 위원 : 보호원에서는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방향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분과위원회에서 사안 별로 판단하고 있음
- A 위원 : 금번 사안의 경우 다른 상업적 저작물을 업로드한 것이 보이지 않고, 본인 글이나 저작권이 없는 고전을 업로드하고 있음

출판 저작물인 '해리포터'를 게시하였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삭제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고의적이거나 영리적으로 업로드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해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임

보호원이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할 당시에는 불법복제물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추후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에 있어 일관성이 필요함

- B 위원 : 신고된 건은 한 권 분량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신고한 시점과 보호원이 확인한 시점에 불법복제물이 존재하였고 이용자가 다른 곳에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당시 업로드된 것만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A 위원 : B 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삭제된 게시물에 있어서 게시자가 저작권법위반임을 알고 업로드했는지도 고려해야 함  
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의문을 가진 것이고,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도 될 것임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심의시점에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 여부에 대해 전체심의회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A 위원 :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본인이 스스로 삭제했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시물 삭제와 비공개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

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1296호는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인데, 전체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전체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 2019-1297호 배경음악을 사용하여 제작한 유튜브 영상물을 프레임 링크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 민원인이 신고한 게시물은 태권도 어린이 캠프에서 촬영한 영상물인데, 배경음악으로 음원이 재생되고 있음
- B 위원 : 유튜브는 Content ID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음악 권리자들이 음악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면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음악이 이용되면 유튜브에서 권리자들에게 식별된 저작물에 대한 광고수입을 지급함  
권리자에게 일정부분 수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처럼 부결 의견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무엇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것으로 시정권고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1297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것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만장일치로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제2019-1298~1389호 게시물은 모두 웹하드를 통하여 제공되는 단순 불법복제물임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298~1389호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기로 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293~1295호, 1297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안전번호 제2019-1296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상정하고, 나머지 안전번호 제2019-1298호~1389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3. 14.

분과위원장 대행 강호갑

위원 정태호